

“채용부터 면직까지” 부패행위 무관용 원칙 확립

(인사부)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어 정부 차원에서 부패행위자 제재 실효성 강화 등 요구*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14.4월, 권익위)

-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 필요

□ 추진내용

- 채용 : 부패행위로 면직된 자를 채용 결격자로 규정
- 인사 :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보직, 승진, 포상 제한
- 면직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 추진실적(제도변경 내용 등)

<인사규정 개정 내용>

구분	변경 후	완료일
보직	부패행위 징계자 즉각 전보, 인사, 예산, 감사분야 보직 금지(93조)	14.10월
승진	부패행위 징계자의 경우 일반 징계자보다 승진불허기간을 6개월 가산(93조)	14.10월
포상	부패행위로 징계절차 진행중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 금지(90조)	15.3월
면직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 제한(40조, 117조)	15.3월

* 부패행위 면직자의 신규채용 제한은 향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

□ 파급효과(성과)

- 방만경영 정상화에 이어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로 「비정상의 정상화」 완료
- 부패행위자 승진제한 등을 정부지침*보다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 확산 선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재부) 상에는 부패행위 징계자의

승진불허기간을 일반 징계자보다 **3개월** 가산하도록 규정